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 : 2022. 11. 10.

2263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고영찬 의원, 장규권 의원

정순기 의원, 엄샛별 의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의안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 및 상위 법 령의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 월정수당을 연 3,122만원으로 하고, 2024년 ~ 2026년 월정수당은 이전연도 월정수당에 이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1조)

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다. 합 의 :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통보에 의함

라. 기 타

1) 일부개정 조례안 : 별도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첨부

3) 입법예고 : 2022. 11. 11. ~ 11. 17.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붙임 3

5)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2항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제8조 중 "구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연 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	연 3,122만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	ίÌ
법」제40조와 <u>같은 법 시행</u>	<u>널</u>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침	싄
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견	성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7	۲]
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u>을</u>
목적으로 한다.	

현

행

제7조(여비지급의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 행령」<u>별표 5</u>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 지급은 <u>구 공무원</u>의 예를 따른 다.

① ~ ② (생 략)

[별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연 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2019년	연 2,917만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신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신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신	

,
제1조(목적)
<u>같은 법 시행령</u>
제33조
제7조(여비지급의 기준)
<u>별표 6</u>
제8조(준용)
<u>지방공무원</u>
.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

정

아

[별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연 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	연 3,122만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3조(월정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인상 결정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으로써 2023년 금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증가액이 총 1,000만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의정팀 김은영
연 락 처	02 - 2627 - 2742

참고자료

2023년 ~ 2026년 의정비 결정 통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관련하여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정비 결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의결일자 : 2022. 10. 7.(금)

나. 의결사항

○ 의정활동비

계	의정자료 수집 · 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월 110만원	월 90만원	월 20만원	

○ 월정수당

연도	원정수당 지급기준	비고
2023년	연 3,122만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2, 10, 7,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김 지의 제사명

금천구청장·금천구의회의장 귀하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26, 2007.12.28., 2014.12.30., 2022.1.12.〉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4.12.30.〉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1.31, 2004.01.20., 2014.12.30.〉, 〈단서 신설 2017.10.13〉

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 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26., 2014.12.30., 2022.1.12.〉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28, 2008.12.24, 2009.01.15., 201 4.12.30., 2019.1.16.>
- 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6.05.26., 2014.12. 30., 2022.1.12.>

제4조 삭제 <2000.1.31>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회의참석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 이외의 사설기관에서의 연수, 연찬회 참석자에게는 여비를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제7조(여비지급의 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 다.<개정 2014.12.30.>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4.12.30.>

제7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0.13.]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 지급은 구 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1.20)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4. 1.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444호(2005. 9. 9) 시행당시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 적용한 제3조제2항의 회

기수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2007.12.2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8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08호, 2019.1.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34호, 2022.1.12.지방

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연 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2019년	연 2,917만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 (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 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6]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원	· 중구된 어미 ㅠ정」 불표 2 제1호

비고

-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 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
시・군・자치구의회의원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의원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 · · · · · · · · · · · · · · · · · ·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